

2016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2016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운영기관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이하 “협력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운영기관과 협력사업장은 노동시장 이행기 청년들에게 사회혁신산업 현장에서의 일터기반학습을 통해 진로탐색과 역량향상,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진입 지원하는 본 사업을 위해 「서울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의 공동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2016. 3. 22 부터 당해 연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이 완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사업의 이행사항)

- ① 운영기관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총괄한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장,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 협력사업장 워크숍 및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3. 참여자의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4.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및 점검
 5. 참여자와 협력사업장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6. 참여자 DB구축 및 취·창업 연계 지원
 7. 사업예산 지급의(서울특별시) 지원, 사업보고
- ② 협력사업장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젝트의 성실한 실행

- 2. 참여자의 상시 업무 지도관리 및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3. 근로계약 및 본 사업의 지침에 명시된 참여자 근로조건외의 보장 및 지원
- 4.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 5. 업무협약에 따른 활동 및 보고 의무
- 6. 참여자와 담당자의 정기 회의 운영
- 7. 서울시와 운영기관에 프로젝트의 중간 및 최종 보고
- 8. 서울시와 운영기관의 현장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 9.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를 지원

제4조 (사업기간 및 프로젝트 배치인원)

- ① 협력사업장에 대한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의 기간은 2016. 3. 22. 부터 2016. 12. 31. 까지로 한다.
- ② 협력사업장의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여성·가족분야 혁신 플랫폼 공간 “스페이스 살림” 2016 마중물 프로젝트 배치인원은 4 명으로 한다.

제5조 (참여자의 계약의 체결 등)

- ① 서울시와 참여자는 참여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서울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② 참여자의 근무장소는 협력사업장의 사업 현장으로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특약)

- ① 이 특약은 “청년허브”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가 사업을 공동추진함에 있어 “청년허브”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가 공동책임 아래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청년허브”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는(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공동추진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동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청년허브”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청년허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청년허브”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를 교육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운영상의 조치)

- ① 운영기관은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을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력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해야 하며 협력사업장은 운영기관의 현장 확인 및 증빙서류 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협력사업장을 점검 결과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1. 본 사업의 지침, 근로계약, 업무협약에 벗어나는 업무 및 근로조건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2. 운영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장이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중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용 변경을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승인받지 않은 경우
-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채용일 전 6개월 이내에 당해 협력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이었던 자를 채용한 경우
 2. 협력사업장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참여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참여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④ 선정심의위원회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협력사업장은 본 사업에 향후 2년간 참여할 수 없음
- ⑤ 협력사업장이 사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침에 따라 경고, 협약해지 등을 조치한다.

제8조 (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력사업장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22일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센터장	서민정	(인)
(협력사업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인)